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조특법§10) 적용시 유의사항 ⦁R&D비용 세액공제의 증가분방식 산식 조정(2013.1.1. 개시 사업연도부터) [당해연도 R&D비용 - 직전 3년 평균 R&D비용(’13년) → 2년 평균(’14년) → 직전연도 (’15년 이후)] × 25%(중견기업 40%, 중소기업 50%) 다만, 소급 4년간 R&D비용이 발생하지 않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R&D비용이 소급 4년 평균 R&D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가분방식 적용 배제 ⦁정부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 또는 인력개발비는 2013.1.1.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배제됨(조특령§9①) - 종전에는 조특법§10의2에 열거된 출연금만 배제하였으나 정부 출연금으로 지출한 모든 연구개발비를 배제하는 것으로 개정 ⦁자체 연구개발비 중 세액공제 대상 전담연구원 인건비에서 제외되는 금액(조특령 별표 6) - 퇴직소득, 퇴직급여충당금, 퇴직연금 등의 부담금 ⦁2016.1.1.이후 개시 과세연도 분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지 않고 행정 사무를 담당하는 연구관리직원 인건비 세액공제 제외(조특령 별표 6) ⦁위탁연구개발비 중 국내외 기업의 전담부서 등에 위탁･재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하여 적용됨(조특령 별표 6)